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25

2017년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자 : 2017년 8월 14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8월 16일
라. 상정결과 :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년 8월 31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서정협)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지난 2005년, 2011년 각각 북촌, 돈화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을 개관하여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시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고, 시민들의 서울무형유산 향유 기회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

○ 그간, 두 곳의 시설은 우리시의 보조금 지원으로 사단법인 서울무형문화재기능보존회에서 관리·운영하여 왔으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로 구성된 기능보존회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시설 운영 상 여러 제약이 있어, 우리시에 운영권 이관을 요청하여 '17년 임시로 시(市)에서 직영 중에 있음

○ 이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전통문화, 교육·전시 프로그램 기획·운영, 홍보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개요

구 분	북촌 전수교육시설	돈화문 전수교육시설
소재지	종로구 북촌로 20-13	종로구 율곡로10길 13
규 모	지상1층(대지 228.8㎡, 건물 127.47㎡)	지하1층, 지상5층 (대지 181.69㎡, 연면적 633.22㎡)
소유자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SH공사 (서울시 임차)
개 관	2005. 9. 1	2011. 6. 1
운영주체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17년 市 직영(임시))	

(2) 민간위탁 개요

○ 위탁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제3호)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개선계획(역사문화재과-2989, ‘17.2.16)
- 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역사문화재과-2988, ‘17.2.16)

○ 위탁기간 : 2년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위탁사업 :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 위탁사업비 : 6억원(부가세 포함)

(3) 민간위탁 사무

○ 전수교육시설 관리·운영

- 운영시간 : 화~일, 09~18시 (※ 야간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운영시간 연장)
- 운영시설 : 북촌, 돈화문 전수교육시설

※ **북촌**은 침선, 자수, 매듭으로, **돈화문**은 소목, 칠, 나전 등 공예위주로 특화운영

- 내 용 : 유지보수, 시설대여, 보안, 청소 등

○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 시연 등 활성화 사업

- 전승자, 일반인 등 수요 대상별 교육·체험 프로그램 기획, 운영
- 무형문화재 작품 상설·기획전시 운영
- 서울무형유산 작품에 대한 판매지원
- 무형문화재 종목별 교육자료 제작·배포
- 학생대상 자유학기제 연계 교육 프로그램, 교사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서울무형유산 대시민 홍보

- 홈페이지 운영 통한 무형유산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신청 접수
- 브로슈어 제작 및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전승지원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9조(전승지원 등)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예산조치 : '18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필요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기　　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서울시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시·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서울시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을 위해

서울시 소유인 종로구 북촌로 20-13의 북촌 전수교육시설과 SH공사 소유인 종로구 율곡로10길 13의 돈화문 전수교육시설을 각각 2005년, 2011년부터 운영 중임.

〈표 1〉 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현황

구 분	북촌 전수교육시설	돈화문 전수교육시설
소재지	종로구 북촌로 20-13	종로구 율곡로10길 13
규 모	지상1층 (대지 228.8㎡, 건물 127.47㎡)	지하1층, 지상5층 (대지 181.69㎡, 연면적 633.22㎡)
소유자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SH공사 (서울시 임차)
개 관	2005. 9. 1	2011. 6. 1
운영주체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17년 市 직영(임시))	
사진		

○ 동 시설은 2017년 1월 13일까지 (사)서울무형문화재기능보존회[1]에서 서울시 보조를 통해 운영을 맡았으며, 북촌 전수교육시설은 2017년 5월, 돈화문 전수교육시설은 2017년 8월까지 무상으로 사용 예정이었음.

1) 2017년 현재 시무형문화재는 기능 분야 26명, 예능 분야(단체포함) 31명이고, (사)서울무형문화재기능보존회는 기능 분야 시무형문화재 14명(전체 기능 무형문화재 대비 54%)이 소속되어 있는 사단법인 단체임.

○ 본 동의안은 (사)서울무형문화재기능보존회에서 운영을 맡고 있던 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2곳을 전문적인 교육 운영기관에게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는데,

2016년 10월 서울시는 기능보존회의 전수교육시설 운영사항 등의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외 전시 보조금의 횡령, 유용 및 기타 비위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해 12월 기능보존회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음.

또한 2016년 2월 14일 기능보존회는 공개 호소문을 통해 시무형문화재의 시연비 현실화, 공예관 이전, 실적위주 평가 개선 등을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같은 달 16일 '무형문화재 활성화 계획'을 내놓는 등 공방이 오고갔음.

2016년 12월 30일 기능보존회는 전수교육시설의 운영주체를 변경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2016년 본래 24명이던 기능보유자수도 서울시의 검찰 고발사건을 겪은 후 2017년 현재 14명으로 크게 축소되었음.

이에 서울시는 기능보존회가 기능교육 부문에서는 전수교육시설에 기여하는 바가 크나 시설운영·예산처리 및 행정 부문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하여 2017년 1월 13일 운영권을 서울시 역사문화재과로 이관하였음.

○ 2017년 서울시 역사문화재과는 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운영 예산으로 5억 8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개선계획(2017.2.15.)〉을 통해 ① 시설 운영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단계적 민간위탁 추진, ② 교육주체를

기존 보유자 중심에서 다양한 전승자 참여 확대, ③ 시연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교육·체험 프로그램 중심 변환, ④ 장소적 특성, 종목의 성격 등을 고려한 공간배치 및 리모델링 추진, 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대시민 홍보 강화를 추진하였음.

그러나 북촌·돈화문 전수교육시설의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현재 실질적인 운영은 중지되어 있으며, 개선계획에 따른 추진 사항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3호에 의해 전문적인 민간위탁 기관에게 맡기고자 의회에 동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임.

〈표 2〉「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시 역사문화재과는 동 시설의 위탁사무를 ① 전수교육시설 관리·운영, ② 서울무형유산 교육·체험의 전문화 및 대중화 사업, ③ 서울무형유산 대시민 홍보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북촌 전수교육시설 2명, 돈화문 전수교육시설 2명의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을 포함한 연간 위탁비용을 6억 8천2백만원으로 예상함.

또한 동 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은 북촌과 돈화문 전수교육시설의 리모델링이 끝나는 시점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할 예정이며, 무형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기존 (사)서울무형문화재

기능보존회에서 시무형문화재를 강사로 초빙하여 진행할 계획임.

결론적으로 (사)서울무형문화재기능보존회의 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운영이 전문적·실질적으로 어렵고, 전문 교육시설인 동 시설을 서울시 역사문화재과가 직접 운영하여 성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호에 의해 전통문화시설 운영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서울시 역사문화재과는 동 시설의 교육부문을 (사)서울무형문화재기능보존회에 일부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강사 선정에 형평성이 요구되며, 논란이 되어온 처우 문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025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14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지난 2005년, 2011년 각각 북촌, 돈화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을 개관하여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시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고, 시민들의 서울무형유산 향유 기회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

나. 그간, 두 곳의 시설은 우리시의 보조금 지원으로 사단법인 서울무형문화재기능보존회에서 관리·운영하여 왔으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로 구성된 기능보존회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시설 운영 상 여러 제약이 있어, 우리시에 운영권 이관을 요청하여 '17년 임시로 시(市)에서 직영 중에 있음

다. 이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전통문화, 교육·전시 프로그램 기획·운영, 홍보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개요

구 분	북촌 전수교육시설	돈화문 전수교육시설
소재지	종로구 북촌로 20-13	종로구 율곡로10길 13
규 모	지상1층(대지 228.8㎡, 건물 127.47㎡)	지하1층, 지상5층 (대지 181.69㎡, 연면적 633.22㎡)
소유자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SH공사 (서울시 임차)
개 관	2005. 9. 1	2011. 6. 1
운영주체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17년 市 직영(임시))	

나. 민간위탁 개요

○ 위탁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제3호)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개선계획(역사문화재과-2989, '17.2.16)
- 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역사문화재과-2988, '17.2.16)

○ 위탁기간 : 2년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위탁사업 :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 위탁사업비 : 600백만원(부가세 포함)

다. 민간위탁 사무

○ 전수교육시설 관리·운영

- 운영시간 : 화~일, 09~18시 (※ 야간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운영시간 연장)
- 운영시설 : 북촌, 돈화문 전수교육시설

※ **북촌**은 침선, 자수, 매듭으로, **돈화문**은 소목, 칠, 나전 등 공예위주로 특화운영

- 내 용 : 유지보수, 시설대여, 보안, 청소 등

○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 시연 등 활성화 사업

- 전승자, 일반인 등 수요 대상별 교육·체험 프로그램 기획, 운영

- 무형문화재 작품 상설·기획전시 운영
- 서울무형유산 작품에 대한 판매지원
- 무형문화재 종목별 교육자료 제작·배포
- 학생대상 자유학기제 연계 교육 프로그램, 교사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서울무형유산 대시민 홍보

- 홈페이지 운영 통한 무형유산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신청 접수
- 브로슈어 제작 및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전승지원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9조(전승지원 등)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18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재정책팀 이훈영 (☎2133-2614)